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 1. 제안사유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토록 일비지급 범위 정함. (안 제2조)

나.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여비를 지급토록 여비지급범위를 정함. (안 제4조)

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을 지급토록 일비지급 기준을 정함. (안 제6조)

라. 국내,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별지와 같이 정함. (안 제7조 제8조)

### 3. 제안근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교육위원의 자격등)
- 동법 시행령 제9조(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

### 4. 심사의견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한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에 위배됨이 없고 충청북도 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것으로 적법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일비지급) ①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 3 조 (출석일수 계산)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상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이를 제 2 조의 출석일수로 본다.

제 4 조 (여비지급)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 5 조 (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구분한다.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일비지급기준)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으로 한다.

제 7 조 (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8 조 (위원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 위원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 1 항에서 "위원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청주시내에서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 8 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위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교육위원회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1984. 5. 25. 조례 제1374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7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식탁료 (1야당)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 정 액	정 액	정 액	특지	특지	특지	800
					4,500	16,000	10,500	
					갑지	갑지	갑지	
					4,500	15,000	10,000	
					을지	을지	을지	
					4,000	13,500	9,000	
위 원	1등급	2등 정 액	정 액	정 액	특지	특지	특지	800
					4,500	16,000	10,500	
					갑지	갑지	갑지	
					4,500	15,000	10,000	
					을지	을지	을지	
					4,000	13,500	9,000	

- 비고) 1. "특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과천시, 경주시, 및 제주시로 "갑지"는 도청소재지,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의정부시, 안산시, 구리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충주시, 이리시, 군산시,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구미시, 포항시, 영천시, 마산시, 울산시, 진주시, 서귀포시로.  
"을지"는 기타지역으로 한다.
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허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7조 제2항 관련)

(단위: 미불화)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준비급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외장· 부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li> <li>·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승차에 요하는 실비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li> <li>·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승선에 요하는 실비액</li> </ul>	1등정액	실비액	가동급 30	가동급 133	가동급 58	150	180	210
					나동급 30	나동급 106	나동급 5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li> </ul>	1등정액	실비액	가동급 25	가동급 100	가동급 53	140	170	195
					나동급 25	나동급 79	나동급 46			
					다동급 30	다동급 80	다동급 43			
					라동급 30	라동급 53	라동급 36			
					가동급 25	가동급 100	가동급 53			
					나동급 25	나동급 79	나동급 46			
					다동급 25	다동급 60	다동급 40			
					라동급 25	라동급 40	라동급 33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스톡홀름, 동경, 홍콩

나. 나등급

(1) 아세아주, 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2) 남·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트리니다드토바고, 자메이카

(3) 유럽 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4) 중동, 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케미루운, 우간다. 코트디부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다. 다등급

(1) 아세아주·대양주 : 인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중화민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수리남

(3) 유럽 주 :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회랍

(4) 중동, 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브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라. 라등급

(1) 아세아주, 대양주 : 인도네시아, 버마, 스리랑카, 튀지, 네팔

(2) 남·북아메리카주 :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구아이, 파라구아이, 아르헨티나

(3) 유럽 주 : 해당국가 없음

(4) 중동, 아프리카주 : 레바논, 북예멘,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3]

위원최소제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표(제8조 제1항 관련)

여 행 거 리	지 급 액
12킬로미터 이상	별표 1의 현지교통지 전액
12킬로미터 미만 8킬로미터 이상	별표 1의 현지교통비의 5할
8킬로미터 미만 2킬로미터 이상	대중교통요금 실비정액
2킬로미터 미만	지급하지 아니함

비고) 대중교통이라 함은 버스 또는 지하철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대중교통의 정기운행간격이 1시간이상인 지역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일반택시 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